국가유공자 등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용태의원·천하람의원·민병덕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4112 발의연월일: 2024. 9. 20.

발 의 자:김용태·천하람·민병덕

이수진 · 김남근 · 장철민

이해민 · 김현정 · 강선우

정진욱 · 김영호 · 오세희

권향엽 • 윤건영 • 허성무

박해철 • 박민규 • 박희승

강준현 • 전용기 • 김민전

김영배 · 박상혁 · 조승래

조 국・김종민・용혜인

김한규 • 고민정 • 정혜경

전재수 · 진선미 · 김용민

우원식 · 이훈기 의원

(3591)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국가유공자 등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은 '전몰군경유족회'의 회원으로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3호 및 제5호에 해당하는 사람의 유족 또는 같은 항 제4호 및 제6호에 해당하는 사람의 유족 중 같은 법에 따라 보상금을 받는 사람으로 규정하고 있음.

'전몰군경'과 '순직군경'은 엄연히 다른 성격의 국가유공자임에도 '전 몰군경유족회'라는 하나의 단체에 소속되어 있어 '순직군경'에 대한 예 우가 미흡한 상황임. '전몰군경유족회' 정관 3조(목적)에도 "본회는 회 원으로 하여금 자활능력을 기르게 하며, 호국전몰장병의 유지를 이어 자유민주주의 체제하에 조국통일을 앞당겨 이룩할 수 있는 활동에 이 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명시돼 '전몰군경'에 대한 예우만 적시되 어 있음.

특히 최근 해병대 채상병 사건, 얼차려 사망사건 등 순직장병 문제로 인한 사회적 갈등이 심해지고 있지만 '전몰군경' 유족이 중심이 된국가유공자단체로는 이러한 갈등을 완화하기 어려운 태생적 한계가 있음.

이에 순직군경과 공상군경을 회원으로 하는 '대한민국순직군경유족회'를 설립함으로써, 순직군경과 공상군경에 대한 예우를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3조 등).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김용태의원·천하람의원·민병덕의원이 대표발의한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4111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법률 제 호

국가유공자 등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유공자 등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대한민국전몰군경미망인회"를 "대한민국순직군경유족회, 대한민국전몰군경미망인회"로 한다.

제3조제2호 본문 중 "제4조제1항제3호 및 제5호에"를 "제4조제1항제3호에"로, "제4호 및 제6호에"를 "제4호에"로 하고, 같은 조 제3호부터 제9호까지를 각각 제4호부터 제10호까지로 하며, 같은 조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대한민국순직군경유족회: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5호에 해당하는 사람의 유족 또는 같은 항 제6호에 해당하는 사람의 유족 중 같은 법에 따라 보상금을 받는 사람. 다만, 보상금을 받는 유족이 없는 경우에는 「국가유공자 등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 각 호에 규정된 선순위자로 하되, 순위가 같은 사람이 2명 이상인 경우에는 나이가 많은 사람이 우선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조(목적) 이 법은 대한민국상	제1조(목적)
이군경회, 대한민국전몰군경유	
족회, <u>대한민국전몰군경미망인</u>	대한민국순직군경유족회,
<u>회</u> , 광복회, 4·19민주혁명회, 4	<u>대한민국전몰군경미망인회</u>
· 19혁명희생자유족회, 4·19혁	
명공로자회, 재일학도의용군동	
지회 및 대한민국무공수훈자회	
를 설립함으로써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이 상부상조(相扶相助)	
하여 자활(自活) 능력을 기르고	
순국선열과 호국전몰장병의 유	
지(遺志)를 이어 민족정기를 선	
양(宣揚)하고 국민의 애국정신	
을 함양하며 자유민주주의의	
수호 및 조국의 평화적 통일과	
국제평화의 유지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회원) 다음 각 호의 단체	제3조(회원)
(이하 "국가유공자등단체"라 한	
다)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	
른 사람을 회원으로 할 수 있	
다.	

- 1. (생략)
- 2. 대한민국전몰군경유족회: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 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 제3호 및 제5호에 해당하는 사람의 유족 또는 같은 항 제 4호 및 제6호에 해당하는 사 람의 유족 중 같은 법에 따라 보상금을 받는 사람(제3호에 해당하는 사람과 미성년자는 제외한다). 다만, 보상금을 받 는 유족이 없는 경우에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 원에 관한 법률 | 제5조제1항 각 호에 규정된 선순위자로 하되, 순위가 같은 사람이 2 명 이상인 경우에는 나이가 많은 사람이 우선한다.

<u><신 설></u>

1. (현행과 같음)	
2	
제4조제1항제3	
호에	
제4호에	
	
<u>.</u>	

3. 대한민국순직군경유족회: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제1항제5호에 해당하는 사람의 유족 또는 같은 항제6호에 해당하는 사람의 유장하는 사람의 유조 중 같은 법에 따라 보상금을 받는 사람. 다만, 보상금을 받는 유족

이 없는 경우에는 「국가유공 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 각 호에 규정된 선순위자로 하되, 순 위가 같은 사람이 2명 이상인 경우에는 나이가 많은 사람이 우선한다.

4. ~ 10. (현행 제3호부터 제9 호까지와 같음)

<u>3.</u> ~ <u>9.</u> (생 략)